

수원 공동육아 협동조합 급여규정

2019. 1. 1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과 방향)

- ① 본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규정을 훌륭히 교사를 유치하고 이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며, 교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한다.

제2조(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본급 (상여금 포함)
- ② 특근수당
 1. 시간외수당
 2. 연·월차수당
 3. 들살이수당
- ③ 특별수당
 1. 직책수당
 2. 근속수당
- ④ 퇴직금
- ⑤ 특별상여금

제2장 급여계산과 지급방법

제3조(급여계산일과 지급일)

급여계산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

급여는 통화로써 직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비상시 지급)

조합은 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경조사, 질환, 부상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지급기일전 임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일할 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① 신규채용(발령일 기산)
- ② 휴직 또는 복직(발령일 기산)
- ③ 해고(처분일 포함)
- ④ 무단으로 월간 3일을 초과하여 결근

제7조(급여계산의 특례)

급여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월간 만근으로 간주한다.

제8조(급여조정)

경기변동, 물가상승, 조합의 재정상태변동 등으로 인한 급여조정에 관하여는 매년 초 노개위(노동조건개선위원회, 이하 노개위)에서 교사회의와 충분한 협의한 후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기본급)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을 말한다.

제3장 기본급

제10조(기본급)

기본급은 직무별 초임금과 경력연수에 따른 호봉승급분에 의해 계산한다.

- ① 기본급 : 매년 초 최저시급을 고려하여 노개위를 통해 결정한다.
(노개위 결정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② 호봉승급분 : 호봉당 10,000원
- ③ 반일제 교사의 초임금 : 매년 초 최저시급을 고려하여 노개위를 통해 결정한다.
(노개위 결정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④ 영양교사(또는 조리사)의 급여는 매년 초 최저시급을 고려하여 노개위를 통해 결정한다.
- ⑤ 청소용역의 경우 최저시급을 고려하여 노개위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경력연수의 계산)

- ① 경력연수는 본인의 해당부문 경력, 군경력 등을 평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경력연수의 계산
 1. 경력 : 보육교사 경력을 경력연수로 하되 1년 미만의 경력은 제외한다. 일반 어린이 집의 1년 경력은 0.5호봉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1년 경력은 1호봉으로 한다. (단, 그 상한선을 5호봉으로 하고 경력인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육아경력 : 12개월~36개월은 1호봉, 36개월 이상은 2호봉을 가산한다.
군경력은 1년(12개월)로 인정한다.
 3. 학력 : 일반학과 2년제 이상의 대학 졸업자에게는 1호봉을 가산하며 유아교육학과 전공 2년제 이상의 대학 졸업자에게는 2호봉을 가산한다.

제12조(정기승급)

- ① 신규채용 후 1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호봉 승급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는 승급할 수 없으며,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단, 산전·산후휴가는 제외한다.)

제13조(기본근무시간)

- ① 정교사 기본근무시간은 휴계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으로 한다.
(휴계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을 운영할 경우와 평일 반일제 근무자는 4시간 30분을 기

준으로 한다)

② 영양교사(또는 조리사) 기본근무시간은 점심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③누리자원(대체교사) 기본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 30분으로 한다.(휴게시간 30분 포함)
청소종사자 기본근무시간은 하루 3시간으로 한다.

제4장 제수당

제14조(시간외수당)

- ① 하루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초과근무시간당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
- ②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하루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연차수당)

- 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월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6조(들살이수당)

들살이 수당은 1박 2일의 경우 50,000원을, 2박 3일의 경우 70,000원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직책수당)

원장(교사대표)에 한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2019년 기준이며, 매년 노개위를 통해 지급액 조정이 가능하다.) 원장(교사대표) 사고 시 그 직무 대행자에 대하여는 대행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한 교사에 대하여는 매월 30,000원을 지급한다. 이후 매 1년마다 5년까지 2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6년 이상 근무 시는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단,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산전, 산후 휴가제외)

제18조(활동비)

교사의 복지를 위한 활동비를 매월 교사회에 10만원을 지급한다.(2019년 기준이며, 매년 노개위를 통해 지급액 조정이 가능하다.)

제5장 퇴직금

제19조(퇴직금)

만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할 때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월평균임금을 근무연수로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자격수당, 근속수당이 포함된다.

제6장 보칙

제23조(해고수당)

직원을 30일 전에 통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금액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3개월 미만의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4조(휴직 시 급여)

휴직 시 급여지급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 인사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및 사회적 관습 그리고 통상관례에 근거하여 유권해석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1차 개정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9일부로 제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제2차 개정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로 제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제3차 개정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20일부로 제3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제4차 개정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로 제4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제5차 개정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로 제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제6차 개정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로 제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제7차 개정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로 제11조(경력연수의 계산) 조항을 개정한다.

제10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로 제7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제8차 개정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상여금 조항 삭제, 제10조 기본급, 제14조 시간외수당, 제15조 연차수당 조항을 개정한다.

제1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로 제8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제9차 개정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5일 부로 제 9차 개정하여 시행한다.